

충청북도 6.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
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6.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기 위하여, 『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』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,
-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됨(안 제2조).
-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(안 제3조).
-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(안 제5조).

4. 검토의견

이번에 제정하는 충청북도 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 「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○ 안 제2조에서는

-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,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도록 함.

○ 안 제3조에서는

-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함.

○ 안 제5조에서는

- 위원장의 회의 개최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.

금번 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 「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
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1부. 끝.